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8월 24일
2. 제출자: 구미시장
3. 회부일자: 2026년 8월 25일
4. 상정일자: 2026년 9월 2일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II.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경제국장 김 영 철

2. 제안이유

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 기업의 경영 여건과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경제 위기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미 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본 사업은 기업 실태조사 및 기업 DB 구축, 지역경제 동향 분석 및 보고서 발간, 기업애로해결 원스톱 에이전트 운영 등 상시 분석과 지원·관리가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 조사·분석 역량과 통계·DB 구축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다)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8조

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 필요성: 기업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분석 역량이 요구되는 사무로, 통계·조사 수행 경험과 지역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하다.

다. 위탁 사무 내용: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전반

1) 창업벤처기업 생태계 실태조사 및 기업 DB 구축·관리

2) 지역경제 및 산업 동향 분석

3) 월간 구미경제동향 보고서 제작·발간

4) 글로벌 경제 이슈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

5) 기업 원스톱 에이전트 운영(경영·기술 애로 해결, 국가공모 대응)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2027. 3. ~ 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300백만원(시비)

(단위: 백만원)

계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	비고
300	200	10	90	

사.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8.18.)

아. 위탁구분: 재계약 (수탁기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자. 부서의견

- 1) 본 사업은 지역경제 현황을 상시적으로 진단·관리하는 분석 기반 사업으로, 구미시 경제정책 수립과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 사업임
- 2) 전문 조사·분석 인력과 수행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8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편성 예정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라. 성과보고서 및 성과평가 결과서, 감사결과: 안전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동의안은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구미시 경제 현황을 상시 진단·관리하고 기업 경영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지역 산업 통계 분석 및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구미시 경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 DB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단순한 정량지표 평가를 넘어 정책 기여도, 분석 활용도 등 정성적 요소를 함께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탁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하여 사업 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V. 토 론 요 지: 생 략

VI.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VII. 심 사 결 과: 원안가결